

통합공공임대주택(신혼부부)



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수요자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이 한데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통합 모델입니다.

임대조건 등

- 임대기간 최장 30년
- 전용면적 85㎡ 이하

신혼부부

-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
 - 가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(1)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
 - (2) 예비신혼부부(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)
 - (3)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(태아를 포함한다.)를 둔 사람
 - (4)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
 - 나) 무주택세대구성원(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.)일 것
 - 다)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(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를 말한다)이 기준중위소득의 150%[본인 및 배우자(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말한다)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80%를 말한다]이하 일 것. 다만, 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의 160%(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0%로 한다)이하로 한다.

기준중위소득 (2022년 기준)

가구원수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
기준중위소득 75%	1,458,609원	2,445,063원	3,146,025원	3,840,810원
기준중위소득 100%	1,944,812원	3,260,085원	4,194,701원	5,121,080원
기준중위소득 150%	2,917,218원	4,890,127원	6,292,051원	7,681,620원

임대조건 및 신청절차

- 임대보증금 보증금 + 임대료 (시중시세의 35~90% 수준)
 -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소득·자산 충족시(재계약 가능) 최장 30년
 - 신청방법 인터넷 및 방문접수 (iH·LH 홈페이지)
 - 문의 iH(1522-0072), LH(1600-1004)
- ※ 2022년부터 신규 사업승인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은 모두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.
 ※ 세부내용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